

경동대학교 부속유치원 규정

제정 2009. 10. 20 개정 2013. 01. 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원에서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1.25)

제2조 (명칭) 본원은 경동대학교 부속 유치원이라 칭한다.(개정2013.01.25)

제3조 (위치) 본원은 강원도 속초시 도리원길 5 경동대학교 내에 둔다.(설치한다.) (개정 2013.01.25)

제2장 교육연한 ·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교육기간)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단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원장이 수료 · 졸업한 유아에게 재입학을 허락한다)

제5조 (학기)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개정2013.01.25)
3. 개교기념일
4. 학년 말 휴가 하계 및 동계 휴가 (개정2013.01.25)
5. 전항 각호 외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2013.01.25)

제3장 학습편제 및 원아 정원

제7조 (학습편제) 본원의 반편제는 4학급으로 한다.

제8조 (원아 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4학급 160명으로 한다.

제4장 교육 내용 및 교육 일지

제9조 (교육과정) 본원 교육내용은 국가수준의 유치원 누리과정과 강원도 유치원 교육 과정편성·운영 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여 유아 발달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신설 2013.01.25)

제10조 (수업일수)

1. 본원의 수업 일수는 주 5일제 수업으로 18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2013.01.25)

2. 방과후 과정은 토요일을 포함하여 23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2013.01.25)

제11조(수업운영방침)

1. 교육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신설2013.01.25)

2. 방과후 과정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신설2013.01.25)

제5장 입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2조 (입학자격 및 방법)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5세아 유아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1.25)

제13조 (입학) 본원에 입원하려는 원아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원아를 선정한다.

제14조 (퇴학)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일정하지 않은 자(개정2013.01.25)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2013.01.25)

제15조 (수료 및 졸업)

1.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신설2013.01.25)

2. 유치원의 장은 원아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신설2013.01.25)

제6장 수업료 및 그밖에 비용징수

제16조(수업료) 본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비용징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 및 강원도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2013.01.25)

제17조 원장은 교육비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거나 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원칙은 공포한 날(1999. 9.1)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본 원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원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